

「보통예금」 상품설명서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**
- ◆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- **상 품 명** : 「보통예금」
- **상품특징** : 예치금액, 예치기간 등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출금 할 수 있는 예금 상품

2 거래 조건

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.

(2025.09.01.기준)

구 분	내 용	
가입대상	• 제한없음	
가입방법	• 영업점, 모바일뱅킹(SB톡톡+, i-Bank)	
가입해지	• 영업점, 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(SB톡톡+, i-Bank)	
가입금액 및 기간	• 제한없음	
이자지급시기	• 매분기(3,6,9,12월)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다음날 원금에 가산 • 전 이자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당해 이자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,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일적수를 산출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	
예금자 보호여부 [해당]		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“1억원까지”(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 ※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,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예금보험공사, 부보금 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
제한 사항	• 계좌에 압류,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• 질권 설정 : 불가능 •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	
이자율	•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용	
수익률	•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(15.4% ^{주1)})을 공제하여 지급 주1) 이자소득의 14% + 이자소득세의 10%(1.4%)를 징수	
위법계약 해지권	•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 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 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 에 수락여부를 통지 해야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 하여야 합니다. •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	

구 분	내 용
자료열람 요구권	-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열람의 목적,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 -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,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,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. - 저축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세제혜택	-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- 가입대상 : 만65세 이상의 거주자,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
연계제휴서비스	해당사항 없음

3 |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

-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522-79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ibksb.co.kr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계약체결 전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서명(날인)하시기 바랍니다.

본인은 IBK저축은행과 예금거래를 함에 있어 **상품설명서**를 제공받았으며,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예금거래의 **주요내용, 거래조건 및 유의사항**에 대하여 충분히 **설명**을 듣고 **이해**하였음을 **확인**합니다.

20 . . .

고객명 :

(서명/인)